

망원동 43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15-73
------	-------

제출일자 : 2015. 08.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건 명

- 망원동 43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2. 제안 이유

- 망원동 43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1항제1호 및 부칙<법률 제11293호, 2012.2.1> 제12조에 의하여 법 시행일(2012.02.01)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신청이 없어 같은법 제4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3. 망원동 43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개요

(1) 구역현황

- 위 치 : 마포구 망원동 439번지 일대
- 면 적 : 1.1ha
- 추진경위
 - 2011. 10. 20 : 정비예정구역지정(시 고시 제2011-309호)
 - 2014. 04. 10 : 실태조사 결과통보 및 주민의견 청취
 - ※ 토지등소유자 285명 중 찬성 32.6%, 반대 5.6%로 구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 지정신청 불가(찬성 50% 이상인 경우 가능)
 - 2015. 05. 21 :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 ※ 공람기간 : 2015. 05. 21 ~ 2015. 06. 22일까지

(2)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

□ 정비예정구역 기본계획 내용

구역명	면적(ha)	계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단계	비고
망원동439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1.1	190	60	평균층수 10	2	

(3) 주민 공람공고 결과

- 주민공람 의견 : 제출된 의견 없음

(4) 구역해제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1호 및 부칙(법률 제11293호, 2012.2.1)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2012.02.01)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함.
- 당해 구역은 실태조사 결과 찬성동이가 50% 이상인 경우 구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지정을 신청코자 하였으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또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예정구역 지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2015.01.31)까지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없어 같은법 제4조의3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 추진

4. 향후 추진절차

-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구→시)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정비예정구역 해제여부 결정 및 고시(서울시)

